

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청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화훼산업 관련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 (안 제6조)
-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(안 제7조)
-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(안 제8조)
- 화훼 소비촉진 및 생화 사용 촉진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## 가. 발의배경

-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‘19.8.20.) 및 시행(‘20.8.21.)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화훼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
- 화훼산업은 1990년대 수출유망작목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해 2010년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경제 상황 악화로 소비가 둔화되고 청탁금지법, 시장개방확대 등으로 화훼산업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
- 특히 외국 화훼 수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화훼농가들이 경영난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
- 지속적인 화훼산업 생산기반 감소에도 관련 시장은 점차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확대되는 추세로 미래 산업으로서 성장 가치를 보이나, 낮은 산업비중(농업생산액의 0.9%)으로 대규모 재정지원이 어려워, 집적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역량과 재정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- 또한, 최근 1인 가구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듯 ‘반려식물’을 돌보는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편의점 꽃 판매나 꽃 구독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꽃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

- 이에 위촉된 지역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식물 등 화훼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「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」를 발의함

#### 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**안 제4조**는 충청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북도의 화훼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- **안 제5조**는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**안 제6조**는 화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책역량과 재정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충북 화훼산업 발전 거점으로서 다양한 가치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
- **안 제7조**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화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짐

- 안 제8조는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
- 안 제9조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소비 및 사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요청하고, 플라스틱 화훼사용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이를 통해 생화 사용 활성화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

#### 나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르면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” 고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제9조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, 제10조 생산·유통체계 개선, 제13조 교육훈련, 제16조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에서 화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조례의 제정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충청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

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,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

○ **(타당성)** 본 조례에서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지원사업,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, 교육훈련, 소비 및 사용 촉진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**(법적합성)**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**(종합의견)**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화훼산업의 기반 조성과, 화훼 소비 촉진을 통한 화훼농민 소득 증대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등 긍정적 입법효과가 예상됨

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,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, 충북도내 화훼산업 집적지역이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임